

의안번호	2204070
의 퇴 인	이헌승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D37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병급금지 규정 삭제,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인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100% 감면할 경우, 2026년~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5조 8,574억원(연평균 1조 1,715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병급금지 규정 삭제	7,599	7,364	7,138	6,919	6,705	35,726	7,145
참전명예수당 인상	4,813	4,615	4,425	4,243	4,066	22,162	4,432
의료지원 확대	123	130	137	144	152	685	137
합계	12,536	12,109	11,700	11,306	10,923	58,574	11,7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단서 삭제(제1항)	의무규정
2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함(제7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의료지원)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제1항)	의무규정
5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신설	참전유공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재량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1항(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삭제	○	—
2	안 제6조제7항(참전명예수당) 인상	○	—
4	안 제7조(의료지원)	○	—
5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신설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현황 관련 자료의 부재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할 경우, 현행법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가 신규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2024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으로 다른 보상금 및 수당보다 낮아,

추계에서는 병급금지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가 모두 보상금이나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지급대상별 보상금 및 수당 현황: 2024년

(단위: 천원)

구분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고엽제법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재해 부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단가	608~3,681	608~3,681	480~500	1,612	426~2,577	568~1,175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가정
-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 동안의 기간을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금지 규정 삭제(안 제6조 제1항)

(1) 대상자 수

-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받는 보상금, 무공수훈자가 받는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받는 고엽제 수당 대상자가 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상기 보상금 및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2.0%	2.0%	2.0%	2.0%

하여 지급받도록(이후 “병급금지”) 규정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47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 감소

[표 3]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8.7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의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2023년말 기준 9만 4,593명임

[표 4]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 2023년
(단위: 명)

	보상금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합계
인원	54,632	31,645	8,316	94,593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말 기준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에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병급허용 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수급자수를 추정

[표 5] 병급허용 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수급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병급 유형	2026	2027	2028	2029	2030
1. 참전명예수당+보상금	41,632	38,027	34,734	31,726	28,978
2. 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	24,115	22,027	20,119	18,377	16,785
3.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6,337	5,788	5,287	4,829	4,411
A. 병급인원(1+2+3)	72,084	65,842	60,140	54,932	50,1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가정

○ 최근 5년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1,757	1,828	1,945	2,078	2,228	6.1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7]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2,510	2,663	2,826	2,999	3,182	6.1
참전명예수당(35%)	879	932	989	1,050	1,114	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병급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병급금지 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모든 참전유공자([표 4])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3조 5,726억원으로 추계됨

[표 8] 병급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신규지급자(명)	72,084	65,842	60,140	54,932	50,174	-
지급단가(천원)	879	932	989	1,050	1,114	-
추가재정소요(억원)	7,599	7,364	7,138	6,919	6,705	35,72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참전명예수당 인상(안 제6조제7항)

(1) 대상자 수

-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9]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0]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300	320	340	350	390	420	7.0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0%를 적용하여,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천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가율
월 지급액	481	515	551	590	632	7.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2]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 2026~2030년

(단위: 천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A)	879	932	989	1,050	1,114	6.1
현행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B)	481	515	551	590	632	7.0
추가지급단가(A-B)	397	417	438	460	482	5.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26~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2조 2,162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5%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명)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
추가 지급단가(천원/월)	397	417	438	460	482	—
추가재정소요(억원)	4,813	4,615	4,425	4,243	4,066	22,162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료지원 확대(안 제7조)

(1) 지원대상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전액 면제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수를 참전유공자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참전유공자 중 보상금 수급자와 고엽제수당 수급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²⁾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³⁾에 따라 이미 보훈병원 진료비의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게 될 대상자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와 병급금지 조항으로 인한 참전명예수당 미수급자 중 무공수훈자가 대상임
- 기존 참전명예수당수급자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중 1세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75세 이상 비율을 적용하여 보훈병원 전액 무료 대상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4]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100,955	92,212	84,227	76,933	70,270
－ 75세이상(A)	100,417	92,095	84,220	76,932	70,270
무공영예수당 수급 참전유공자	6,337	5,788	5,287	4,829	4,411
－ 75세 이상(B)	6,303	5,781	5,287	4,829	4,411
75세 이상 합계(A+B)	106,721	97,876	89,507	81,761	74,6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2 후단에서 같다)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지원단가

- 현행법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90% 감면 유지 시, 기존 참전유공자의 최근 3년간(2021~2023) 보훈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를 추정

[표 15]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90%감면): 2019~2023년

(단위: 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3년간 연평균 증가율
입원	수진횟수	0.8	0.8	1.1	1	1.5	16.8
	진료단가	41,410	57,117	62,972	67,387	65,831	2.2
외래	수진횟수	2.7	2.8	4	4.3	4.9	10.7
	진료단가	36,515	37,722	38,554	38,412	41,511	3.8
약제	수진횟수	2.7	2.8	4	4.3	4.9	10.7
	진료단가	58,297	69,457	72,716	76,348	77,210	3.0

자료: 국가보훈부

[표 16]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 추정(90% 감면 유지시): 2026~2030년

(단위: 회, 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입원	수진횟수	2.4	2.8	3.3	3.8	4.4	16.8
	진료단가	70,272	71,818	73,398	75,013	76,663	2.2
외래	수진횟수	6.6	7.4	8.1	9.0	10.0	10.7
	진료단가	46,425	48,190	50,021	51,922	53,895	3.8
약제	수진횟수	6.6	7.4	8.1	9.0	10.0	10.7
	진료단가	84,369	86,901	89,508	92,193	94,959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대상 및 진료단가, 수진횟수를 곱하여 90% 감면 유지시 재정소요를 추계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7]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의료지원 추계(90%감면 유지시):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입원	17,925	19,623	21,421	23,358	25,468	107,795
외래	32,934	34,707	36,470	38,280	40,178	182,569
약제	59,851	62,587	65,261	67,971	70,790	326,460
합계	110,710	116,918	123,152	129,609	136,436	616,8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90% 감면 유지시 재정소요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100% 감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18]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의료지원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현행(90% 감면, A)	110,710	116,918	123,152	129,609	136,436	616,824
개정안(100% 감면, B)	123,011	129,909	136,836	144,010	151,595	685,360
추가재정소요(B-A)	12,301	12,991	13,684	14,401	15,160	68,5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를 100% 감면할 경우, 2026~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685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9]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의료지원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추가재정소요(B-A)	12,301	12,991	13,684	14,401	15,160	68,5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병급금지 규정 삭제,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인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100% 감면할 경우, 2026년~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5조 8,574억원(연평균 1조 1,715억원)으로 추계됨

[표 2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병급금지 규정 삭제	7,599	7,364	7,138	6,919	6,705	35,726	7,145
참전명예수당 인상	4,813	4,615	4,425	4,243	4,066	22,162	4,432
의료지원 확대	123	130	137	144	152	685	137
합계	12,536	12,109	11,700	11,306	10,923	58,574	11,7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가정하고 보훈병원 진료단가와 진료횟수 등 최근 3년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